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2.
기획재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7. 31., 이해식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 8. 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2024.11.15.) 상정

제2차 조세소위원회(2024.11.18.) 상정

제3차 조세소위원회(2024.11.19.) 상정

제4차 조세소위원회(2024.11.20.) 상정

제5차 조세소위원회(2024.11.21.) 상정

제6차 조세소위원회(2024.11.22.)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2025.2.11.)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5.2.18.)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

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해식의원)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그 기부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
액은 종전 500만원이었으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25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임.

한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
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음.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만 존재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 행위에 대한 혜택은 마련
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실질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
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 상향에 따라 500만원 초
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 구간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로 규

정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수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동 개정안 등 56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